

구미시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이자
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5. 11. .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새마을 영세농 자립화사업 및 협동경영 소득사업 중단으로 사업 관련 금융기관 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「구미시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」 폐지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보조금 지급 관련 예산 삭감 조치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, 예산재정과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구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완료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
폐지조례안

구미시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

가. (생략)

나. 조례·규칙의 제정·개정·폐지 및 그 운영·관리

다. ~ 카. (생략)

2. ~ 7. (생략)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(생략)

소 관 부 서		새 마을 과
입 안 자	과 장	조 희 태
	팀 장	배 영 아
	담 당 자	이 성 미 (480-6806)